

퇴 직 보 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 명칭

퇴직보험

2. 사업경영의 지역

이 보험의 약관에 규정한 단체에 소속하고, 장래 그 단체로부터 퇴직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

3.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단체

이 보험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② 피보험단체

이 보험에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라 함은 동일 보험계약 (이하 “계약”이라 함)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함.

4. 보험종목의 세목

① 확정금리형

예정이율(준비금적립이율)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함.

② 금리연동형

회사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해당월 동안 확정 적용하여 책임준비

금을 적립함.

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의 금리연동형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② ①의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1) 회사는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 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가)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I : 직전 6개월간 투자 수익

E : 직전 6개월간 투자 비용

A₆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나)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 산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 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함.

$$\text{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2)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전 계약에도 변경시부터 적용함

- ③ 회사는 년 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 ④ 중도해지시 해지이율 및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로 한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6. 보험료

① 기본보험료

계약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

② 재정안정화보험료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한도 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

③ 연금충실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여 노후생활에 대비하고자 하는 종업원을 위해 기업이 납입하는 보험료 (퇴직급여관련규정에 정한 퇴직급여와 이 계약의 퇴직급부와의 차(差)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함)

7. 재정방식

장래 약속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본이 되며, 퇴직보험에서는 여러 재정방식중 특정나이방식을 적용함.

- 특정나이 결정방법

- 단체의 직전3년이내 신규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가입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 단체의 직전3년이내 신규 보험가입자중 최빈(最頻) 보험가입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 단체의 직전3년이내 신규 보험가입자중 최저 보험가입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 관련 자료의 부실, 부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여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8.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①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해지일(또는 이전일)까지

② 납입기간

전기납

③ 납입주기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④ 수금방법

계약자의 직접 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수금 등

⑤ 보험료의 반환

회사가 승낙거절 또는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함. [단, 이전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직접지급 하거나 또는 이전전 회사에 다시 반환함]

9. 재정결산 및 재계산

① 재정결산

회사는 매년 재정결산일(계약단체의 보험년도말일 또는 사업년도말일)에 계약단체에 연금재정의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재정결산 실시

② 재계산

- 정기 재계산 : 매 5년마다 계약응당일(또는 퇴직보험 계약협정서에 정한 날) 기준으로 실시, 예정기초율 변경가능 (단, 예정사망률, 표준퇴직률 및 표준승급률 변경시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재계산시 변경된 예정기초율을 적용함)
- 임시 재계산 : 퇴직급여 제도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퇴직급여 중간정산 등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10. 보험세목의 변경

보험세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응당일에 한하여 퇴직보험 계약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함) 변경을 통해 실시함.

11. 급부의 종류

해당단체의 퇴직급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급부

12. 퇴직급부 산정의 방식 및 기준

퇴직급부 산정방식 및 산정기준은 해당단체의 퇴직급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3. 급부지급의 기준

적립비율(“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함) 기준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함.

14. 급부지급의 방법

① 연 금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퇴직급여(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거치기간 중의 적립이율은 확정금리형 또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거치기간 중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음.
- (4) 연금의 지급형태는 개인형 또는 부부형으로 하고, 각각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등으로 설계할 수 있음.
- (5) 연금의 지급기간은 종신 또는 유기로 하고, 반드시 보증지급기간(5년이상 20년이내)을 설정함.

(6) 연금의 지급방법은 연단위연금, 6개월단위연금, 3개월단위연금 또는 월단위연금으로 함.

(7)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급부수급권 취득시 연금의 지급형태,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한 연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금재원을 인수하여 지급을 보장토록 함.

(8) 계약단체의 퇴직급부가 일시금인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급부가 연금인 경우에는 퇴직급부를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산출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장래에 지급을 위해 인수하는 연금재원으로 함.

(9) 연금적용이율은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됨.

- 확정금리형 : 퇴직연금의 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함.
- 금리연동형 : 퇴직연금의 재원을 각 연금지급시점의 연금원자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금지급시점까지 금리연동형의 준비금적립이율로 적립하여 지급함.

(10)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연금지급 개시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11)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연금지급 개시후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확정금리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금리연동형 :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금원자를 산출시점까지 금리연동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적립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② 일시금

15. 목표적립비율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는 계약체결시 목표적립비율(퇴직급여제도를 퇴직보험제도로 이행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기재하며, 계약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비율을 상향 또는 해당 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1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은 퇴직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함) 및 협정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조사한 후 청약에 대한 승낙여부 결정.

1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 가입

- ① 추가가입대상자는 계약체결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자 및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자 중 해당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한 자로 함.
- ②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추가가입시점 적용 적립비율 해당액을 납입토록 함.
- ③ 추가가입자에 대한 기본보험료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함.
- ④ 추가가입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를 추가로 드리거나 정정함.

18. 해약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은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계약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단,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퇴직보험 계약 협정서에 의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이전 처리함.

19. 협정서, 청약서 등의 서식

- ① 협정서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함.
- ②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함.
- ③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별첨 제3호의 서식으로 함.
-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통지의 서식은 별첨 제4호의 서식으로 함.

20. 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적립하되, 거치연금전환제계약 및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함.

21.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실시하지 아니함.

22.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23. 통지가 필요한 사항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부터 통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미리 협정서에 정함.
- ② 회사는 계약체결전 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를 통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함.
- ③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하도록 함.

24. 근속년수 및 가입년수의 계산

계약단체의 퇴직급여관련규정에 의함.

25.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으로 운용됨.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평가함.

③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함.

(2)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함.

(가) 급부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나) 계약의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26. 계약이전수수료의 보험세목에의 편입

퇴직보험 계약협정서에서 정한 계약이전수수료는 당해 보험세목의 수익으로 편입함.

27. 기 타

① 퇴직급여 중간정산제의 처리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실시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재계산시에 근속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출하나,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재계산을 통하여 보험료를 재산출함.

② 임원계약

임원의 퇴직급부액 결정방법 등이 그 단체의 종업원과 상이하여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음.

③ 공동인수계약의 취급

이 보험의 계약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취급기관(법인세법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음.

④ 기존 계약단체 적용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